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3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5. 2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5. 25.

다. 상정일자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6. 1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아동청소년과장

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이용시설의 청소년우선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
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소년 시설 중 독서실 사용료 상한에 대한 아동·청소년과 성인 간 차등 적용 및 인상(안 제7조 제1항 별표)
- 맞춤법에 따른 표현 정비

3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이용시설의 청소년우선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맞춤법에 따른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7조제1항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에 대한 별표에서는 독서실 사용료를 아동 청소년 및 성인 구분 없이 1회 사용료를 500원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성인 1회 사용료를 5,000원으로, 월간사용료를 110,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,
 - 같은 조 제1항 제1호 “사용료등”을 “사용료 등”으로 제1항 “사용료등”을 “사용료 등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“사용료등을 납부”에서 “사용료 등을 납부”로 “사용료등을 반환”에서 “사용료 등을 반환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사용료 등”을 “사용료 등”으로 수정하는 것임.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청소년활동 지원법」 제10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 및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, 사용료 등 결정은 2023년제3차 마포구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청소년활동지원법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(청소년시설의 지도·감독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·공공성·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,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청소년활동진흥법

제10조(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)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수련시설

가. 청소년수련관: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나. 청소년수련원: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다. 청소년문화의 집: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·문화·예술 중심의 수련시설

라. 청소년특화시설: 청소년의 직업체험, 문화예술, 과학정보,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

마. 청소년야영장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,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

바. 유스호스텔: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·설비와 부대·편익시설을 갖추고, 숙식편의 제공,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(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·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)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

2. 청소년이용시설: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

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(이하 "청소년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쉼터: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2. 청소년자립지원관: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
3. 청소년치료재활센터: 학습·정서·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·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
4. 청소년회복지원시설: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2. 마포구립 청소년시설 현황

| 시설명 | 소재지 | 시설규모 | 인력 | 개관 일 | 수용 인원 | 위탁 운영체 | 위탁 기간 | 운영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마포 청소년 문화의집 | 상암산로 1길67 (상암동) | 대지1,463㎡ 연면적3,687㎡ 지하1/지상5 | 22명 | 2010. 2.1. | 500명 | (사) 한국 청소년 재단 | 22.04.01.~ 25.03.31. | 청소년사업, 특화사업, 상담사업, 평생교육사업 |
| 도화 청소년 문화의집 | 도화2길77 (도화동) | 대지358㎡ 연면적1,114㎡ 지하1/지상3 | 7명 | 2013. 11.1. | 200명 | (사) 한국 청소년 재단 | 22.04.01.~ 25.03.31. | 청소년사업, 상담사업, 평생교육사업 |
|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 | 월드컵로 25길 164 (망원동) | 대지990㎡ 연면적974㎡ 지하1/지상3 | 9명 | 2014. 3.3. | 210명 | (사) 한국 청소년 지원 네트워 크 | 22.12.20.~ 25.12.19. | 청소년사업, 상담사업, 평생교육사업 |
| 마포구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| 희우정로77 (망원동) | 226.23㎡ 지하1층 (도로변 1층) | 6명 | 2009. 4.30. | 상담복지 기관 | (사) 한국 청소년 지원 네트워 크 | 23.01.01.~ 24.12.31. | 위기청소년 맞춤형복지서 비스, 상담, 찾아가는 학교지원 등 |
| 마포구 청소년 지원센터 | 희우정로77 (망원동) | 226.23㎡ 지하1층 (도로변 1층) | 3명 | 2015. 6.1. | 상담복 지 기관 | 마포구청 소년상담 복지센터 | 21.01.01.~ 23.12.31. | 학교밖 청소년 발굴, 상담,교육지원, 직업체험,자 립지원등 |

3.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

1. 사용료

(단위 : 원)

| 구분 | 대 상 | 1 회 사용료 | 월 사용료 상한(1시간 기준) | | | | | | 비 고 |
|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주1회 | 주2회 | 주3회 | 주4회 | 주5회 | 주6회 | |
| 체육관 | 어린이 | 1,300 | 5,200 | 10,400 | 15,600 | 20,800 | 26,000 | 31,200 | |
| | 초·중·고생 | 1,800 | 6,400 | 12,800 | 19,200 | 25,600 | 32,000 | 38,400 | |
| | 대학생, 성인 | 2,500 | 8,800 | 17,600 | 26,400 | 35,200 | 44,000 | 52,800 | |
| 헬스장 | 고등이하 | 2,000 | 8,500 | 17,000 | 25,500 | 34,000 | 42,500 | 51,000 | |
| | 대학생, 성인 | 3,000 | 12,500 | 25,000 | 37,500 | 50,000 | 62,500 | 75,000 | |
| 독서실 | 아동청소년 | 500 | 11,000원 (월간 사용료) | | | | | | |
| | 성인 | 5,000 | 110,000 (월간 사용료) | | | | | | |
| 시설대관 | 200석 이내 | 250,000 |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,000 | | | | | | 기 본 3시간 |
| | 300석 이내 | 330,000 |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,000 | | | | | | |
| | 400석 이내 | 450,000 |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,000 | | | | | | |
| 비 고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체육관은 수영장, 탁구장, 헬스장, 당구장,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. 시설대관은 강당, 극장,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. 사용료 할증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토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%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. 2) 시설대관의 경우,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 4.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(구민 문화체육센터, 청소년수련관, 동 자치회관, 복지관 등)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 | | | | | | | | |

4.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



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

마포구



수신자 아동청소년과장

(경유)

제목 2023년 제2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

1. 경제진흥과-22436(2023. 5. 2.)호와 관련입니다.
2. 2023년 제2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.

가. 심의일자: 2023. 5. 2.(화)

나. 심의방법: 서면 심의

다. 심의결과

| 연 번 | 부 서 명 | 안 건 명 | 심의 결과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| 아동청소년과 |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일부 인상(안) | 원안 의결 |

- 붙임 1.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결과 보고 1부,
2. 심의의결서 1부, 끝.

경제진흥과장

★구두관

생활경제팀장

경제진흥과장

협조자

시행 경제진흥과-22499 (2023.05.02.) 접수 아동청소년과-9172 (2023.05.03.)

우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(성산동) /http://www.mapo.go.kr

전화 02)3153-8560 /전송 02)3153-8589 / chs30@mapo.go.kr / 비공개(6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